

의안번호	2220419
의 퇴 인	김선민 의원
회 답 일	2026.8.7.
추계번호	26C2493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기본 정책)	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·경제적·문화적 환경의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·경제적·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개인이 자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3	안 제14조의2(시설물 자살 시도방지체계의 구축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)에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시도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경찰청장, 소방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과 자살시도방지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(제2항)	
		제2항에 따른 자살시도방지협의체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자살시도 방지 조치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		
1	안 제2조(기본정책)	(미대상) 보건복지부는 자살수단 차단사업을 시행 중이며, 이 사업은 자살수단 중 빈번히 사용되는 일산화탄소, 농약, 교량에 대해 번개탄 비진열 판매 및 구매자에 용도 묻기, 농약 보관함 설치, 교량에 스티커·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 지역별로 집중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사업명과 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자살수단차단 사업 예산 현황		
		사업명(담당부처)	사업년도(년)	사업비(백만원)
		자살수단차단 및 인식개선사업(보건복지부)	2026	230

2	안 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(미대상)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9조(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)에 따라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사업이 시행 중이며,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사업 예산 현황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사업명(담당부처)</th><th>사업년도(년)</th><th>사업비(백만원)</th></tr><tr><td>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(보건복지부)</td><td>2026</td><td>207</td></tr></table>			사업명(담당부처)	사업년도(년)	사업비(백만원)	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(보건복지부)	2026	207												
사업명(담당부처)	사업년도(년)	사업비(백만원)																		
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(보건복지부)	2026	207																		
3	안 제14조의2 (시설물 자살 시도방지 체계의 구축)	(미대상)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자살위험도가 높은 교량에 대해 지자체 및 경찰청 등이 자살예방시설 설치를 건의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살예방 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하고, 국가철도공단 등에서도 관련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(안 제14조의2제1항) 자살예방시설 설치 사업 예산 현황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사업명(담당부처)</th><th>사업년도(년)</th><th>사업비(백만원)</th></tr><tr><td>목포대교 자살예방 방지시설 관련 실시설계 용역비(국토교통부)</td><td>2026</td><td>400</td></tr><tr><td>승강장 지능형CCTV (국가철도공단)</td><td>~2025</td><td>1,500</td></tr><tr><td></td><td>2026</td><td>2,500</td></tr><tr><td>저상승강장PSD(국가철도공단)</td><td>~2025</td><td>4,080</td></tr><tr><td></td><td>2026</td><td>300</td></tr></table>			사업명(담당부처)	사업년도(년)	사업비(백만원)	목포대교 자살예방 방지시설 관련 실시설계 용역비(국토교통부)	2026	400	승강장 지능형CCTV (국가철도공단)	~2025	1,500		2026	2,500	저상승강장PSD(국가철도공단)	~2025	4,080		2026	300
사업명(담당부처)	사업년도(년)	사업비(백만원)																		
목포대교 자살예방 방지시설 관련 실시설계 용역비(국토교통부)	2026	400																		
승강장 지능형CCTV (국가철도공단)	~2025	1,500																		
	2026	2,500																		
저상승강장PSD(국가철도공단)	~2025	4,080																		
	2026	300																		
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안 제14조의2제2항·제3항·제4항)																				

2. 상세 사유

□ 자살시도방지협의체의 구성·운영(안 제14조의2제2항·제3항)

- 개정안은 자살시도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살시도방지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임
- 개정안 시행 시 운영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3항에서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므로 현시점에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－ 협의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만으로 구성될 경우 별도의 회의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인쇄비, 임차료 등의 운영비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5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에 2026년 2,500백만원을 편성하고 자살예방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

및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추진 중임

□ 자살시도 방지 조치 비용의 지원(안 제14조의2제4항)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자살시도 방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으로, 비용의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현시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시행할 자살시도 방지 조치의 내용과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